공고 제 26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09월 05일

고제면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유 *순	유 *순 1962-11-15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	직권말소 2022-09-05